상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제정 2016. 12. 29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본 권리장전에서 '대학원'이라 함은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의 모든 전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② '대학원생'이라 함은 상지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③ '학업 및 연구'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.

④ '연구출판물'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.

⑤ '구성원'이라 함은 상지대학교 학부생, 대학원생 등 상지대학교에 재학하거나, 교원, 직원, 연구원 등 상지대학교에 직·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.

⑥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과 대학원 시행세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른 정의와 동일시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,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.

② 교원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상지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

제4조(자기결정권)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연구와 학업은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
제5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학원생 대표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인 존엄권) ① 대학원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며,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연구하고,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
②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고,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
제8조(알권리)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에 해당하는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학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 등, 학사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다.

제9조(학업연구권)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해서는 안되며,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, 연구, 훈련 및 멘토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
④ 대학원생의 석·박사 학위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,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.

제10조(저작권)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주요 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
제11조(건강 및 안전에 대한 권한) ①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,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③ 모든 대학원생은 임신, 출산, 육아를 이유로 학업 및 연구활동을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학업과정에서 임신, 출산,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12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 구성원들은 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.

제13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의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, 대학원장(학과장 등)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생의 신청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4조(대학구성원의 책무)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.

②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해결절차)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,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
제16조(그 밖의 권리)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권리장전은 2016년 12 월 29일부터 시행한다.